

	교원양성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7
		제정일자	2013.01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거 교원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심의
2.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(1명 이상의 외부위원 포함)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교무입학처장과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입학처장이 위원장을 한다.

③ 위원장은 교원양성관리를 위하여 교직담당교원을 지정 할 수 있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(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)
2.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3.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교직담당교원은 연임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